

평생교육원 운영 규정

제1장 총 칙

제1조(명칭) 본원은 대신대학교 부설 평생교육원(이하 ‘본원’)이라 칭한다.

제2조(목적) 본원은 대학 교육을 통하여 지역사회에 적극 봉사함으로써 교육의 기회 평등과 평생교육에 선도적 역할을 담당하여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국가와 지역사회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기구) 본원은 경북 경산시 백천동 137번지 대신대학교 캠퍼스 내에 둔다.

제2장 조 직

제4조(원장) ① 본원의 운영을 위하여 원장을 두며, 원장은 전문적 소양을 갖춘 명망 있는 자를 총장의 제청으로 이사장이 임명한다.

② 원장은 평생교육 업무를 총괄하고 소속 직원을 지휘 감독한다.

제5조(교직원) ① 본원은 교육과정의 운영과 행정업무를 담당하는 교직원을 두며, 교직원은 원장의 명을 받아 교학 및 행정업무를 담당한다.

② 본원의 교육과 연구 업무 등을 담당하기 위해 평생교육원 소속의 (석좌, 초빙, 객원, 기금)교원을 둘 수 있다. (2021.08.17 개정)

③ 평생교육원(석좌, 초빙, 객원, 기금) 교원은 원장의 추천으로 총장이 임용한다.
(2021.08.17 개정)

④ 본교 입학생 및 평생교육원 학생모집에 공헌이 있는 자는 교원으로 임용할 수 있다.

제3장 운영위원회

제6조(구성) ① 본원의 교육과정 및 행정업무에 관한 중요사항들을 심의 의결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이하‘위원회’)를 둔다.

② 위원회는 5인 이상 7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원장은 위원장이 된다.

제7조(심의·의결) ① 심의·의결 사항은 위원회의 위원장이 소집하며 다음 사항을 심의·의결 한다.

1. 교육사업계획에 관한 사항
2.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
3. 교육과정 및 교과목에 관한 사항
4. 수강인원 및 수강료에 관한 사항
5. 규정의 개정 및 폐기에 관한 사항
6. 기타 본원 운영에 관한 중요 사항

② 의결 정족수는 위원회의 다른 규정이 없는 한 재적 위원의 과반수이상, 출석위원 과반수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단, 가부 동수일 경우에는 위원장이 결정한다)

제8조(임기)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단, 결원으로 인해 새로이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4장 교육과정

제9조(교육과정) ① 본원은 설립목적에 부합되는 목회신학원과정, 교회사역과정, 교회정지 기과정, 음악교육과정, 사회복지상담교육과정, 외국어과정, 보육교사양성과정, 컴퓨터교육과정을 편성하여 운영하고, 필요시에는 기타 교과과정을 설치 운영한다.

제10조(수업기간) 본원의 수업기간은 각 과정에 따라 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하고 수강생은 수시로 모집한다.

제11조(수업일수) 본원의 수업일수는 운영위원회에서 별도로 정한다.

제12조(지원자격) 본원의 교육과정을 수강할 수 있는 자격은 원칙적으로 제한을 두지 아니 한다. 단, 특수한 교육과정에 대해서는 학력 또는 연령 등을 제한할 수 있다.

제13조(선발방법) 본원의 수강생은 선착순으로 선발함을 원칙으로 한다. 단, 교육과정 상의 수준을 감안하여 특별히 필요한 경우에는 면접과 필기시험을 실시할 수 있다.

제14조(수강인원 및 학습비) ① 각 교육과정을 수강하는 수강인원과 학습비 등을 운영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교육부 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 본원의 교과과정을 수강하고자 하는 자는 본원에서 정한 학습비등을 납부하여야 한다. 단, 폐강, 과오납 등을 제외하고, 수납한 수강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제15조(수료 및 수료증 교부) ① 본원의 수료자는 소정의 교육과정의 90%이상을 이수한 자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료한 자에게는 본원에서 수료증(별지 1)을 교부할 수 있다.

제5장 수강생 활동 및 포상

제16조(자치회) ① 학풍을 진작하고 수강생 상호간의 화합과 단결을 도모하기 위하여 각 과정마다 자치회를 구성할 수 있다.

② 자치회는 각 교육과정에 회장과 총무 각1인을 둘 수 있다.

제17조(수강생의 활동 제한) 수강생은 본원 수강기간 동안 정치활동을 할 수 없으며 집단 행동, 농성 등 학업에 지장을 주는 어떠한 행위도 할 수 없다.

제18조(포상) 교육과정 이수 시에 타의 모범이 되는 수강생에게는 수료 시 포상할 수 있다.

제6장 회 계

제19조(회계연도) 본원의 회계 연도는 대신대학교 회계 연도에 따른다.

제20조(예산편성) 원장은 매년 12월중 다음 해 예산운영계획서를 작성하여 운영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21조(수입원) 본원의 운영 경비는 다음과 같은 수입으로 충당한다.

1. 수강료
2. 위탁훈련 지원금 (위탁훈련시)
3. 기타 수입 및 보조금

제22조(강의료지급) 강의료는 수강료의 70%로 한다. 단 특별한 사정이 있을 시에는 운영위원회에서 의결하여 총장이 최종 결정한다.

제7장 분 원

제23조(분원 설치) 본원 하에 분원을 설치할 수 있다.

제24조(분원 운영) 분원의 운영은 본원의 운영 규정에 준하여 실행하며, 세부적 운영지침은 운영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하여 실행한다.

부 칙

1. (시행일) 이 규정은 2014년 8월 19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 (시행일) 이 규정은 2019년 7월 4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 (시행일) 이 규정은 2021년 8월 17일부터 시행한다.

【별지 1】

제 호

수료증서

성명

년 월 일 생

위 사람은 대신대학교 부설 평생교육원의 과정을 수료하였기에
이 증서를 수여함.

년 월 일

대신대학교 부설 평생교육원장

대 신 대 학 교 총장